

의안번호	제 420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349회)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6월 29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0
----------	-----

제출연월일 : 2016년 6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수목원 휴원일의 특별개원 조항 신설로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고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분야로 확정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목원 이용자 편익증대를 위한 특별개원 조항 단서 신설(안 제4조)
 - 휴원일 중 개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개원
- 수목원 내 입장제한 및 행위의 제한 규정 폐지 (안 제7조, 제8조)
 - '12년부터 산악자전거 대회 미개최로 인하여 단서 내용 삭제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는 휴원일 중 특별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원할 수 있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전거를 타는 행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개원과 휴원)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원하여 개방지역내의 식물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공개한다.</p> <p><u><단서 신설></u></p> <p>1. ~ 5. (생 략) ② (생 략)</p>	<p>제4조(개원과 휴원) ① ----- ----- ----- ----- -----.</p> <p>다만, 도지사는 휴원일 중 특별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원할 수 있다.</p> <p>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입장과 관람의 금지)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과 관람을 금지한다.</p> <p>1.·2. (생 략) <u>3.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u> 4. ~ 6. (생 략)</p>	<p>제7조(입장과 관람의 금지) ----- ----- ----- -----.</p> <p>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5. (현행 4~6과 같음)</p>
<p>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수목원과 시설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4. (생 략) <u>5. 자전거를 타는 행위(단, 기준에 인정된 산악자전거 대회는 제외)</u> 6. ~ 11. (생 략) ② (생 략)</p>	<p>제8조(행위의 제한)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 <u>5. 자전거를 타는 행위</u> 6.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발췌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국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개원 및 휴원)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1.7.25.]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5.]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2.1.25.>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개원 및 휴원)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간 12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9.>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수목원을 6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